##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1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오세희·장철민·허성무

김태년 • 전진숙 • 이병진

김동아 · 김현정 · 김우영

김태선 · 황 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 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생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
	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
	거나 지원할 수 있다.
<u>⑥</u> ~ <u>⑨</u> (생 략)	<u>⑦</u> ~ <u>⑩</u> (현행 제6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